

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,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

- 제도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보건복지행정타운(중곡동) 내 공공기관장
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릴레이 캠페인’ 실시 -

-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5월 23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. 국가생명윤리정책원(이하 정책원)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다. 2024년 4월 새로 취임한 홍창권 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공공기관장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릴레이 캠페인’을 실시한다.
-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산하·소속기관이 모여 있는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공공기관장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.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장들이 솔선수범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함으로써, 소속 직원들과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홍창권 원장은 “존엄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, 가정의 달 5월에 아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되어 기쁘다”라며, “저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관장들의 제도 참여가 대국민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.”라고 밝혔다.



▶ 5월 23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홍창권 원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.

- ‘연명의료결정제도’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*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,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를 통해,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·등록할 수 있다.

* (연명의료)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착용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

- 홍창권 원장은 “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2백만을 돌파, 현재 237만 명이 작성했다.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.”라며, “이번 캠페인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”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	책 임 자	센 터 장	조정숙 (02-778-7505)
		담 당 자	선임팀장	문용준 (02-778-7001)
			홍보팀장	김미리 (02-737-8310)

□ 제도 개요

- (법률)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('16.2월 제정, '18.2월 시행)
- (사업수행기관)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*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지정
- (제도참여기관)
 - (의료기관)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**434개소**('24. 4월말)
 - * 자체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 참여 위해 12개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·운영
 - (등록기관)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**686개소**('24. 4월말)
 - * 보건소, 의료기관, 비영리법인·단체, 공공기관, 노인복지관

<주요 용어>

- ☞ (연명의료)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 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
- ☞ (연명의료중단등결정)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
 - 의사 2인의 임종과정 판단 + 환자 의사 확인(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, ②연명의료계획서, ③가족 2인 진술) * 환자 의사 확인 불가 시 ④가족 전원합의
- ☞ (사전연명의료의향서)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
- ☞ (연명의료계획서)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
- ☞ (말기환자)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(통상 3~6개월)
- ☞ (임종과정)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,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(통상 2~3일)

참고2

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운영 현황('24. 4월말)

□ 제도 참여기관

- (의료기관) 총 434개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* 운영 또는 공용윤리위원회 위탁

* (의료기관윤리위원회)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5인 이내로 구성·설치되어 제도와 관련 심의, 상담, 교육 등 수행

종별 \ 구분	대상기관 수	설치·등록기관 수	등록률(%)
상급종합병원	47	47	100.0
종합병원	329	202	61.4
병원	1,403	39	2.8
요양병원	1,392	138	9.9
합계	3,171	426	13.4

*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(호스피스 전문기관) 8개 기관 등록

- (등록기관) 총 686개소 지정·운영

구분	지역보건 의료기관	의료기관	비영리 법인/단체	공공기관	노인복지관	계
기관수	155	176	34	2(238*)	81	448(686*)

* 238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/지사/출장소 포함

□ 제도 운영 현황

